

2010년도 사업계획(안)

CONTENTS..

2010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안)

2010년도 사업수행 일정표

2010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

□ 조직 기반 확대 사업

○ 목적

- ▶ 2010년도 회원 신규 가입과 제3기 자문위원 영입을 통한 협회 조직 기반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 사업 내용

- ▶ 신규 회원 가입 추진

구 분	법인회원	종신회원	합 계
2008년	51	47	98
2009년	69	124	193
2010년(목표)	80	180	260

- ▶ 제3기 자문위원 영입

- 제1기 전문위원 임기만료(2010.6.17)전후 제3기 자문위원 영입 추진

□ 조직 정비 사업

○ 목적

- ▶ 협회 내규 제정 이후 회원 중심의 조직 운영을 통하여 회원 권익 창출을 도모함

○ 사업 내용

- ▶ 협회 내규 정비

- 제1차 정기이사회 : 201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내규 개정(안) 승인
- 제2차 정기이사회부터 지속적인 정비 추진

□ 회원 지원 사업

○ 정기총회

- ▶ 목적 :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등 협회 주요 안건 심의(연1회)
- ▶ 사업 내용 : 연1회(1분기) 개최
 - 제6회 정기총회 : 2월 23일(화) 개최

○ 정기이사회

- ▶ 목적 : 협회업무 보고 및 주요 의결사항 심의
- ▶ 사업 내용 : 연4회(분기별 1회) 개최하되, 제2차~제4차 정기이사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결의/분과운영위원단 모임 등으로 대체
 - 제1차 : 1월 21일(목) 개최
 - 제2차/제3차/제4차 : 분기 중 개최 추진

○ 임시총회 및 임시이사회

- ▶ 목적 : 협회 긴급사안에 대한 심의
- ▶ 사업 내용 : 부정기 개최

○ 분과운영위원단 모임

- ▶ 목적 : 신교통세미나, 국내외 견학 등 협회 추진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반영함
- ▶ 사업 내용 : 연2회(반기별 1회) 개최
 - 상반기 : 3월 개최 추진
 - 하반기 : 7월/8월 개최 추진

○ 분과총회

- ▶ 목적 : 신교통협회 발전 및 신교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 사업 내용 : 연2회(반기별 1회) 개최하되, 세미나/송년모임 개최 후 자유토론 형식으로 추진
 - 상반기 : 4월(제1차 신교통세미나) 개최 추진
 - 하반기 : 9월(제2차 신교통세미나)/12월(송년모임) 개최 추진

○ 기타 비정기 모임

- ▶ 목적 : 회장단 모임, 개별 분과위원회 개최, 회원 소모임에 대하여 협회가 일부 예산 및 활동을 지원함
- ▶ 사업 내용

No.	모임 명칭	대 상
1	회장단 모임	회장·부회장사
2	개별 분과위원회 모임	회원사 및 자문위원
3	야외활동 모임	회원 전체 (개인회원 포함)
4	기타 회원 소모임	

□ 정보제공·출판 사업

○ 「신교통 메일링 서비스」 제공

- ▶ 목적 : 신교통 관련 뉴스 및 정부·업계 동향 제공
- ▶ 사업 내용 : 협회 회원 및 관련기관 메일회원 대상, 주2회 정보 제공

○ 협회지 「신교통」誌 발간

- ▶ 목적 : 협회 회원,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업계·기관·단체 등에 신교통 관련 종합 정보 제공
- ▶ 사업 내용 : 연2회(반기별 1회, 신교통세미나와 연계) 발간 및 배포

○ 「회원 전자수첩」 제작

- ▶ 목적 : 회원 및 자문위원 명단 공유
- ▶ 사업 내용 : 협회 담당 임원 및 담당자 인사이동 반영(홈페이지 공지 및 상시 다운로드 가능)

○ 「신교통 자료집」 발간

- ▶ 목적 : 신교통 관련 자료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자료집 발간
- ▶ 사업 내용 : 신교통 관계 법령, 용어, 통계 자료 등 자료집 발간·판매

□ 신교통 발전·진흥 사업

○ 신교통세미나

- ▶ 목적 : 신교통 관련 사업, 정책, 사례, 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협회 회원 및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연구, 경험 및 성과 발표를 통한 신교통 발전 도모
- ▶ 사업 내용
 - 협회 회원 중심의 세미나 참여
 - 신교통 업계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 ▶ 추진계획(안)
 - 제1차 : 4월 개최 추진
 - 제2차 : 9월 개최 추진

○ 국내 신교통 현장견학

- ▶ 목적 : 국내 신교통사업 추진 기관 및 업계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
- ▶ 사업 내용 : 향후 건설·운영 예정인 신교통수단 건설 현장¹⁾ 및 차량제작사²⁾ 공장 방문 및 차량 시승
- ▶ 추진 방향 : 국내 언론사와 협력(기사화)을 통하여 업계 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 추진계획(안)
 - 제1차 : 5월 개최 추진
 - 제2차 : 11월 개최 추진

○ 해외 신교통 견학

- ▶ 목적 : 해외 신교통 관련 전시회 참관 및 해외 세계 주요 도시의 신교통수단 활성화 사례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신교통 관련 분야의 세계적 추세와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국내 신교통업계의 성장을 도모

1) 월미은하모노레일(2010년 2월 개통 예정), 용인경전철(2010년 6월 개통 예정), 부산4호선(반송선, 2010년 개통 예정), 부산-김해경전철(2011년 초 개통 예정), 의정부경전철(2011년 8월 개통 예정) 등

2) 현대로템(철제차륜 AGT,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우진산전(고무차륜 AGT), 한국화이바(경전철, 바이모달 트램), 로윈(모노레일), 벡터스(PRT) 등

▶ 사업 내용

- 전시회 및 컨퍼런스 행사 참석, 한국전시관 방문, 세계 주요 차량제 작사 시찰 및 시장조사
- 세계 주요 도시의 신교통수단 시찰 및 운영기관 방문을 통한 친환경 교통정책 수립·건설·운영 사례 벤치마킹 및 정보교류

▶ 추진계획(안)

-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UITP 10th Light Rail Conference 견학 추진

***UITP 10th Light Rail Conference 행사 개요**

- UITP(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Transport, 세계대중교통연맹)가 주관하는 ‘Light Rail Conference’는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행사로 이번이 제10차 대회임.
- ‘UITP 9th Light Rail Conference(Istanbul, Turkey)’ 개최 결과 : 2008년 6월 11일은 도시철도, 푸니쿨라 및 트램 탑승과 이스탄불 철도시스템을 브리핑하는 기술방문(Technical visi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일과 13일은 소주제별로 7차의 세션별 회의를 진행함.

***2010년도 신교통 관련 해외 행사 현황**

No.	기 간	개 최 지	행 사 명	행 사 내 용
1	3.8~11	Bangkok, Thailand	Asia Pacific Rail 2010	전시회, 컨퍼런스
2	3.10~12	Taipei, Taiwan	Rail Solutions Asia 2010	전시회, 컨퍼런스
3	3.17~19	Moscow, Russia	Exporail 2010	전시회(터널기술)
4	3.22~25	London, UK	MetroRail 2010	전시회, 컨퍼런스
5	4.13~15	Birmingham, UK	INFRARAIL 2010	전시회
6	5.19~21	Shanghai, China	Metro China 2010	전시회
7	6.6~9	Vancouver, Canada	APTA 2010 Rail Conference	컨퍼런스
8	6.8~10	Turin, Italy	EXPO Ferroviaria 2010	전시회
9	7.29~31	Taipei, Taiwan	RAILTEC 2010	전시회, 컨퍼런스
10	9.14~16	Chicago, USA	USA Rail 2010	전시회, 컨퍼런스
11	9.21~24	Berlin, Germany	InnoTrans 2010	전시회, 컨퍼런스
12	10.18~20	Madrid, Spain	UITP 10th Light Rail Conference	전시회, 컨퍼런스
13	11.10~12	Chiba, Japan	Mass-Trans Innovation Japan 2010	전시회, 컨퍼런스

□ 신교통 관계 법령 정비 사업

- 목적 : 신교통 관계 법령 제·개정 동향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 추진 방향 :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춰 도시철도법을 비롯한 신교통 관계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되, 기존 관련법령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사업 목표 : 최적화된 신교통시설 건설과 무인자동운전 및 무인역사의 설치·건설·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사업 내용
 - ▶ 신교통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협회 세미나/좌담회 개최를 통한 정책건의
 - ▶ 정부/연구기관 주최 신교통 관계 법령 제·개정 공청회/토론회 참여를 통한 의견서 제출

*최근 신교통 관계 법령 제·개정 동향

구 분	주요 내용	제·개정 동향
도시철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장관 협의 절차 삭제(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법 제18조)함) • 도시철도 사업절차 간소화(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서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개선(법 제23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9.22 법제처 심사 통과 • 2009.9.30 국회 제출 후 계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의 정의에 최근 도입 중인 노면전차, 선형유도전동기, 자기부상 열차 등을 포함 •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역세권 개발 계획수립 절차 보완 • 도시철도 사업절차 간소화(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9607호, 2009.4.1, 일부개정 • 시행 2009.7.2
도시철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법’ 이 개정(법률 제9607호, 2009.4.1. 공포, 7.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제21589호, 2009.6.30, 일부개정 • 시행 2009.7.2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처분기준 합리화(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정비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처분 이전에 경고를 하여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령 제99호, 2009.2.12, 일부개정 시행 2009.2.12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철도법(법률 제8509호, 2007.7.13. 공포, 2008.7.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25호, 2007.10.15. 공포, 2008.7.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등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도시철도차량에만 적용하던 안전기준을 선로 시설, 전철전력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등의 도시철도시설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등)을 정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령 제152호, 2009.8.13, 제정 시행 2009.8.13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철도법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1232호, 2008.12.31. 공포, 2009.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령 제146호, 2009.7.2, 일부개정 시행 2009.7.2
도시철도 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규정(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의 최대 연장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등)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령 제106호, 2009.3.19, 일부개정 시행 2009.3.19
도시철도 건설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량전철 시설 및 장비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개정 추진(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도자료, 2009.11.18) 기존 ‘도시철도 건설규칙’ 을 총칙(제1편), 중량전철(제2편), 경량전철(제3편)으로 개편 및 행정규칙으로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내부규정으로 해설서(편람) 제정 추진(경량전철 표준화기준 의견수렴, 2009.12.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9.11.18) 법(안) 국토해양부 제출 (2009.11.30~12.4) 2009.12월 공포 예정 미시행
도시철도 운전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인운전 경량전철 및 노면전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운전규칙 개정 추진(경량전철 표준화기준 의견수렴, 2009.12.7~8)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제차륜 형식 차량 표준규격 개정(안) 선형유도모터 형식 차량 표준규격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량전철 표준화기준 공청회 (2007.9.4~5) 경량전철 표준화기준 공청회 (2008.11.20~21) 법(안) 국토해양부 제출 (2008.12) 미시행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전철의 특성에 맞는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안)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 추진 중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시 사업절차 간소화(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심의사항 일부인정 등)을 위한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9.11.18) 2010.6월 공포 예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제안 사업의 사업시행자 결정방식(주무관청이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제9556호, 2009.4.1, 일부개정 시행 200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기반시설 범위 추가 민간투자사업의 평가제도 개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통제 강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확대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제9282호, 2008.12.31, 일부개정 시행 2009.1.1

<p>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 개정(법률 제9282호, 2008.12.31. 공포, 2009.1.1. 시행)되고, 추가 개정(법률 제 9556호, 2009.4.1. 공포, 7.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산업기반신용 보증기금의 보증 최고한도 조정(2천억→3천억), 부정당업자의 민간 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최고 2년 이내), 민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 단 구성·운영 등)을 정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9282호, 2008.12.31, 일부개정 • 시행 2009.1.1
<p>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준공시 단축된 공사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운영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 BTL 사업 금융 위험분담 가능 규정 마련 • 민자사업 사업구조(부대·부속사업 활성화, 해지시 지급금 산정방법의 한시적 적용, 투자위험 분담 방식 도입 등) 개선 • 자금조달(자금제조달 적용 완화 등) 여건 개선 • 신뢰성(기 MRG부담 사업에 대한 국민부담 완화, 사업자 선정 평가 공개 등) 제고 • 기탁(제안비용 보상 확대, BTL 성과평가 개선, 민자적경성 조사(VFM) 재검증 도입 등) 제도 개선 • 예비민자적격성조사 시행 기준 마련 •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관리 규정 보완 •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분석결과 검토 의뢰시 주무관청의 기본설계도서 제출 생략 규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12.17,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92호 • 2009.10.6,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62호 • 2009.8.14,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20호
<p>궤도운송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명 및 용어의 정의 변경(舊 삭도·궤도법) • 궤도사업 허가 등의 행정권한을 시·군·구청장으로 이양 • 전용궤도에 관한 규정 정비(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삭도·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함) • 보험 가입 의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9636호, 2009.4.22, 전부개정 • 시행 2009.10.23
<p>궤도운송법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4.22 전부개정된 ‘궤도운송법’에서 위임한 사항(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가·승인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보고 등)을 정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11.2, 전부개정 • 시행 2009.11.2
<p>신교통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교통시스템의 범위 및 정의 • 바이모달 트램, 승객여정선택형 궤도기반 개인통행수단(PRT), 간선 급행버스체계(BRT) 등 신교통시스템의 개발 및 지원 근거 마련 • 신교통시스템 구축 및 사업운영 근거 마련 • 신교통시스템 운행안전 확보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도 정부입법계획’ (법제처고시 제2009-9호, 2010년 9월 시행 계획(안) 일정 등) 발표 • 법제처 심사 전
<p>노면전차 건설관리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면전차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면전차의 특성에 맞도록 규정하고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의 건설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12.17, 정두언 의원 대표 발의 • 심사 전
<p>철도건설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건설심의위원회 폐지 • 소규모 철도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을 조정 • 철도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인 철도시설에 영구 시설물(건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9547호, 2009.3.25, 일부개정 • 시행 2009.6.26

철도건설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건설법’ 이 개정(법률 제9547호, 2009.3.25. 공포, 6.2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등)을 정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제21549호, 2009.6.19, 일부개정 • 시행 2009.6.26
철도건설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철도의 고속화를 저해하고 있는 선로등급을 폐지 • 급변하는 철도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융통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철도건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확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철도건설기준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령 제163호, 2009.9.1, 전부개정 • 시행 2009.9.1
철도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용어의 순화 • "행정형벌합리화 방안"에 따른 양벌규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7.13 법제처 심사 통과 • 2009.7.31 국회 제출 후 계류 중 • 법률 제9608호, 2009.4.1, 일부개정 • 시행 2009.4.1
철도사업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9608호, 2009.4.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제21630호, 2009.7.16, 일부개정 • 시행 2009.7.1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형벌합리화 방안"에 따른 양벌규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9609호, 2009.4.1, 일부개정 • 시행 2009.4.1
철도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철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병영 지정제도를 폐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형벌합리화 방안"에 따른 양벌규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8.10 법제처 심사 통과 • 2009.9.2 국회 제출 후 계류 중 • 법률 제9610호, 2009.4.1, 일부개정 • 시행 2009.4.1
철도안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 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요건을 폐지하여 신규 제작검사기관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진입부담을 해소하고, 철도시설의 보호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철도차량 등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제작검사수행실적이 포함되어 있어 신규기관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작검사수행실적 요건 대신 ‘국가표준기본법’ 제 23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것을 지정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제21897호, 2009.12.21, 일부개정 • 시행 2009.12.21 • 대통령령 제21552호, 2009.6.25, 일부개정 • 시행 2009.6.2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 시 신규기관의 진입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기준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제출서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1552호, 2009.6.25.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같은 영에서 위임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정하고,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업무분야별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령 제195호, 2009.12.21, 일부개정 • 시행 2009.12.21 • 국토해양부령 제143호, 2009.6.25, 일부개정 • 시행 2009.6.25

철도차량 운전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량전철 무인운전을 위한 철도종사자 탑승의무 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9.11.18) 용역 추진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육상·해상·항공 교통의 통합연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9.1 법제처 심사 통과 2009.9.14 국회 제출 후 계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형벌합리화 방안"에 따른 양벌규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제9606호, 2009.4.1, 일부개정 시행 2009.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제정(법률 제7382호, 2005.1.27. 공포, 2006.1.2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령 제19280호, 2006.1.19, 제정 시행 2006.1.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2009년 12월)를 토대로 경량전철 교통약자좌석 설치기준 개선 추진(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도자료, 2009.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교통부령 제493호, 2006.1.26, 제정 시행 2006. 1.28 용역 수행 중 2010.6월 공포 예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형벌합리화 방안"에 따른 양벌규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제9566호, 2009.4.1, 일부개정 시행 2009.4.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의 제정 (법률 제8725호, 2007.12.21. 공포, 2008.6.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령 제21471호, 2009.5.6, 일부개정 시행 2009.5.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3.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를 도입·추진키로 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정비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령 제89호, 2009.7.1, 일부개정 시행 2009.7.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형벌합리화 방안"에 따른 양벌규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제9199호, 2008.12.26, 일부개정 시행 2008.12.2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2.10 국보 제1호인 승례문의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시설의 화재예방과 방화관리를 위하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시키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12.21. 공포, 2008.6.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령 제21318호, 2009.2.6, 일부개정 시행 2009.2.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3.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총 3개의 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령 제91호, 2009.7.3, 타법개정 시행 2009.7.3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명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며, 그 밖에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승강기와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9384호, 2009.1.30, 일부개정 • 시행 2009.3.1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84호, 2009. 1. 30. 공포, 3.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령의 명칭 및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제21345호, 2009.3.12, 일부개정 • 시행 2009.3.12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84호, 2009. 1. 30. 공포, 3.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칙의 명칭 및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령 제69호, 2009.3.16, 일부개정 • 시행 2009.3.16
<p>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명 변경(舊 교통체계효율화법) • 육상·해상·항공 교통의 통합연계체계 구축 •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여 연계교통체계 강화 •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근거 마련 •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정보 활용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9772호, 2009.6.9, 전부개정 • 시행 2009.12.10
<p>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 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9931호, 2010.1.13, 제정 • 시행 2010.4.14

2010년도 사업수행 일정표

구분	주요 행사	주요 내용
1월	제1차 정기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도 결산 보고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월	제1차 임시이사회 제6회 정기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회 명칭 변경 및 당연직 임원 제도 도입(안) ‘(가칭)한국도시철도협회’ 정관(안)
3월	상반기 분과운영위원단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세미나 및 국내견학 등 상반기 협회 사업 추진계획(안) 논의
4월	제1차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분과총회 병행 개최 추진
5월	제1차 국내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박1일(수도권) 개최 추진
6월	제3기 자문위원 영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기 전문위원 임기 만료(6.17) 후 신규 자문위원 영입 추진
7월	하반기 분과운영위원단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세미나 및 국내견학, 해외견학 등 하반기 협회 사업 추진계획(안) 논의
8월		
9월	제2차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분과총회 병행 개최 추진
10월	해외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UITP 10th Light Rail Conference 견학 5박6일(10.18~22) 개최 추진
11월	제2차 국내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박2일(부산권) 개최 추진
12월	송년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도 협회 활동 보고 및 2011년도 사업계획(안) 등 논의